

동물용의약품등

[] 제조
[] 수입

품목허가(신고)사항변경신청(신고)서

※ [] 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가. 안전성·유효성 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: 10일 나. 안전성·유효성 등 심사가 필요한 품목: 40일

제 조 · 수입업체	업체명	허가(신고)번호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
소재지	본사	(전화번호 :)
	제 조 소 또는 창고	(전화번호 :)

변경사항

품명	허가(신고)번호	구분	허가(신고)내용	변경내용	사유

제 조 (수입) 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용도	☐ 농림축산용	☐ 양봉용 · 양잠용 · 애완용(관상어 제외)
	☐ 농수산물 검용	☐ 수산물(관상어 포함) 전용

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제조(수입)품목허가(신고)사항 변경을 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(신고)인
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검역본부장 ·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· 한국동물약품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변경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(허가사항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)와 변경사유서 각 1부	수수료 5,000원
------	---	----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신청(신고)서 작성	→	접 수	→	해당과 이송	→	검 토	→	결 재	→	허가(신고)증 작성
신청(신고)인		농림축산검역본부 ·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· 한국동물 약품협회(민원실)		농림축산검역본부 ·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· 한 국동물약품협회		농림축산검역본부 ·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· 한 국동물약품협회		농림축산검역본부 ·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· 한 국동물약품협회		농림축산검역본부 ·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· 한 국동물약품협회(교부)